

[ ]먹는샘물 [ ]먹는염지하수 [ ]수처리제 [ ]제조업 [ ]수입판매업 [ ]유통전문판매업  
[ ]허가신청서 [ ]등록신청서 [ ]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 : 10일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: 7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: 7일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: 7일
신청인	성명(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)	생년월일	
	주소(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)	전화번호	
상호			영업의 종류
제조공장(영업소)소재지	(전화번호: )		
제품명			

「먹는물관리법」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 
신청인  
(서명 또는 인)

시 · 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경우 가.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(평면도를 포함합니다) 나. 제조공정 설명서 다.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라. 취수정설비명세서(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합니다) 마. 취수정 형성상태(形成狀態)를 촬영한 텔레비전-카메라 검층(檢層) 필름 바. 배수시설 명세서(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에 한합니다) 사.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(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에 한합니다)	2.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가.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(평면도를 포함합니다) 나.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	수수료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: 50,000원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: 30,000원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: 50,000원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: 30,000원
	3.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. 사업계획서(수입처를 포함합니다) 나. 보관시설명세서 다. 원수가 「먹는물관리법」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(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) 라. 원수가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(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)	4.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가. 사업계획서(제조자를 포함합니다) 나. 보관시설명세서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5호나목3)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	

처리절차

